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① 제2조[납세의무]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또는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03.16 단서개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만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2013.06.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2013.06.28 개정]

② 삭제[2009.02.04]

③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0.02.18 개정]

- 사업자[2010.02.18 개정]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5. 연금소득
-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8호,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8호,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2항 및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 · 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 · 이용원 · 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통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8.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⑥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금융투자소득 [2020.12.29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발급 등]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발급 등]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 2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 3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 4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 5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2021.05.04 제목개정]]
- 6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7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8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2021.02.17 신설]]
- 9 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 [이자 · 배당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 · 기록[2021.02.17 제목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02.17 개정]

1.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2016.02.17 신설]]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벼목 및 저목의 소득 **[2021.02.17 개정]**

2의3.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6.02.09]

③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
[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3. 법인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복식부기의무자

④ 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5.04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3. 법인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2009.04.14 제목개정]]

영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2021.05.04 제목개정]]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4.14 개정]**

1. 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2020.03.13 개정]**

2. 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영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1.05.04 제목개정]]

- ① 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21.05.04 개정]**
- ②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1.05.04 개정]**
1.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021.05.04 개정]**
 2.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021.05.04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④ 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 ⑥ 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액"이란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액(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③ 법인이 이의 또는 임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④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록개정]]

-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록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03.16 개정)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1.03.16 개정)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021.03.16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21.03.16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1.03.16 개정)
-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21.03.16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으로 정한다. (2021.03.1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2021.05.04 제목개정]]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1.05.04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021.05.04 개정]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1.05.04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또는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021.05.04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2009.04.14 제목개정]]

영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2021.05.04 제목개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 · 관리 및 입력 · 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2019.03.20 개정]